

〈간이투자설명서〉

기준일: 2026.07.02

한화동유럽증권 자투자신탁 H(주식) [펀드코드: 69630]

투자 위험 등급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은 3등급에 해당하나,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시장 상황의 악화로 인해 해당 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라 더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 관련 자산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동유럽 지역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가격 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지역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은 3등급에 해당하나,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시장 상황의 악화로 인해 해당 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라 더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 관련 자산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동유럽 지역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이격 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지역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화동유럽증권 자투자신탁 H(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동유럽 지역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를 기초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한다)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국가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한화동유럽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동유럽지역 상장주식 및 동유럽국가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DR포함)에 60%이상 투자
투자목적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익 등을 추구
투자전략	동유럽국가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동유럽국가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DR포함)에 주로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자본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분류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청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청보수	청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택-오프인(A)	납입금액의 1.40%	0.98	0.56	1.71	1,271.4	268	403	545	850	1,756
수수료미징구-오프인(C1)	없음	1.92	1.50	1.84	1.92	197	393	587	1,005	2,314

※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의 한시적 인하에 관한 사항

① 이 투자신탁은 2022년 9월 8일부터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 청구 및 환매 청구를 재개하는 날의 전일까지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집합투자업자보수율을 한시적으로 [연 0.34%]를 적용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환매 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이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를 재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보수율의 적용이 기간만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88조

제2항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 및 집합투자계약 제43조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투자신탁은 오프라인 클래스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 종류C1은 투자기간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종류	최근 1년 2025/06/02~ 2026/06/01	최근 2년 2024/06/02~ 2026/06/01	최근 3년 2023/06/02~ 2026/06/01	최근 5년 2021/06/02~ 2026/06/01	설정일 이후 2007/05/30~ 2026/06/0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32.08	18.67	22.02	10.17	1.61
	비교지수 (%)	32.76	21.74	25.13	-8.03	-2.67
	수익률변동성 (%)	11.06	17.28	15.54	34.22	26.81

- * 비교지수: 비교지수: MSCI EM Europe 90%, 매경BP Call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단위: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강다연	2002	책임(매니저)	11	921	-	-	96.16	43.10	-
		손경아	1987	부책임(매니저)	24	4,501	-	-			2년 8개월

- * 기준일: 2026년 7월 2일
-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람여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금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동유럽 상장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 변동위험	외국 주식 등은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헷지 가능한 주요통화(USD, EUR, GBP 등) 표시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만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환위험을 헷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목표 환헷지 비율은 환헷지 가능한 주요통화 순자산의 70% 이상이며, 그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음), 기타 환헷지 수단이 없는 동유럽국가 현지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 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헷지를 위해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헷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화자산과 환헷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헷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위험	이 투자신탁은 동유럽지역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 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7영업일(D+6)에 환매금액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D+7)에 환매금액 지급
환매 수수료	· 종류 A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C1, C2, C3, C4, C5, C-I, C-W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table><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table>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에 대한 과세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을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투자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헷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종류 수익증권간 전환)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이하 "최초매수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처리를 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집합투자 업자	한화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anwhafund.co.kr)										
모집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 발생일	2026년 7월 16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tr><td rowspan="2">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수수료</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td></tr></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미징구 (C1)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보수채감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 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고액 (I)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kr)